

일본 회사법상 CSR경영원칙 도입에 관한 논의

곽 관 훈*

목 차

- | | |
|---------------------------|---------------------|
| I. 서론 | 3. CSR의 제도화 |
| II. CSR의 국제동향 및 유형에 대한 분석 | 4. 소결 |
| 1. CSR과 관련한 국제동향 | IV. 일본 회사법과 CSR경영원칙 |
| 2. CSR의 유형분석 | 1. 회사법상 도입논의 |
| III. 일본에 있어서 CSR의 도입과 전개 | 2. 최근 동향 |
| 1. 일본의 CSR론의 연혁 | V. 결론 : 향후 전망 |
| 2. 현대적 의미의 CSR론의 전개과정 | |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CSR을 일의적인 정의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CSR은 말 그대로 기업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이며, 사회적 상황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¹⁾ 다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CSR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인권·사회·지역·윤리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인권적 측면이 강조되거나 기부행위 등이 강조되는 등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1) CSR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곽관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제25권 3호(한국상사법학회, 2006), 115쪽 이하 참조.

기업의 CSR경영에 대한 요구는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국제표준기구(ISO)가 추진 중인 CSR에 관한 국제적 규격인 ISO 26000의 제정이다. 동 규격이 제정되면 기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CSR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정부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가까운 일본의 경우 CSR과 관련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법화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CSR의 국제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최근 일본에 있어서 CSR의 동향 및 회사법에의 반영 노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CSR의 국제동향 및 유형에 대한 분석

1. CSR과 관련한 국제동향

CSR은 회사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1790년대 동인도회사가 카리브해의 노예노동자를 이용하여 생산한 설탕에 대해 영국의 소비자가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동인도 회사는 노예가 없는 뱃길의 생산자로부터 설탕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CSR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²⁾ 이후 전 세계적으로 CSR과 관련한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

2) ISO Advisory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 *Working Report on Social Responsibility - For submission to the ISO Technical Management Board*(April 30, 2004), paragraph 1.

어 왔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는 CSR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규격등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977년 흑인인권운동가 설리반 목사가 주창한 기업행동원칙인 ‘Global Sullivan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³⁾, 1976년 OECD에 의해 제정된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코피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1999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주창한 기업행동원칙인 ‘UN The Global Compact’⁴⁾등을 들 수 있다.⁵⁾ 이 밖에도 2000년에 미국의 NGO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인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on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가 제정되어,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⁶⁾

EU의 경우 2001년 7월에 CSR의 실행을 위한 문서로서 ‘Green Paper: 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발표하였다. 동 문서에는 기업내부적인 인적자원관리, 직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관리,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과 기업외부적 측면에서 지역 사회, 비즈니스 파트너, 인권, 환경 등의 내용 및 사회 전체적인 사회적 책임통합경영, 사회책임감사, 노동, 사회책임투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 문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CSR과 관련한 전략을 담은 레포트인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ncer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Busines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3) 동 원칙은 인권에 관한 8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업행동원칙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어서 미국기업의 인종분리정책 철폐, 노동환경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동 원칙은 참가기업에 대해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Global Compact’와 인권, 노동, 환경에 관한 9가지 원칙에 대해 지지를 표명할 것과 ‘Global Compact’의 보급을 촉진할 것 및 매년 1회 구체적 활동상황을 UN사무국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5) 谷本寛治, SRI-社會的責任投資入門(日本經濟新聞社, 2003), 12쪽.

6) 水尾順一・田中宏司, CSRマネジメント -ステークホルダーとの共生と企業の社會的責任-(生産性出版, 2004), 38~42쪽.

도 발표하였다.⁷⁾

최근 들어서도 국제적인 규격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원칙)과 ISO 26000을 들 수 있다. 먼저 UN의 PRI원칙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을 선별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⁸⁾ 동 원칙의 핵심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상황뿐만 아니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슈를 함께 고려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PRI는 기관투자자들이 자신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ies)’을 다하기 위한 기준으로 6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 실천기준들을 정하고 있다. 그 6가지의 원칙으로 ‘(i)투자의사 결정시 ESG이슈들을 적극 반영할 것, (ii)ESG 이슈를 투자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투자자가 될 것, (iii)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ESG 이슈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 (iv)투자산업(investment industry)에 있어서의 PRI를 준수할 것, (v)PRI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과 (vi)PRI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 보고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⁹⁾

7) 水尾順→田中宏司, 앞의 책, 44쪽 이하.

8) 동 원칙은 2005년에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당시 코피 아난 총장은 자산기준 세계 20위권의 금융기관 대표와 60개 전문가그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사회책임투자원칙의 제정을 강조하였다. 이후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FI)’를 중심으로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사회책임투자원칙의 제정을 위한 4차례의 대규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사회책임투자원칙(PRI)가 마련되었으며, 2006년 4월 27일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과 캘리포니아 연금기금(CalPERS) 등 30여개 금융기관의 대표자들이 모여 이에 서명하였다. 노희진 외, 사회책임투자 개념 및 국제동향(한국증권연구원, 2006), 7쪽 이하 참조.

9) UNEP, *The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2006, 4, 27),

두 번째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2001년부터 CSR에 관한 국제적 규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 결과 CSR의 국제기준인 ISO 26000이 2010년 5월에 사실상 성립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¹⁰⁾ ISO 26000은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 등 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7대 의제를 사회적 책임 이슈로 규정하고 있다. ISO 26000의 도입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CSR의 유형분석

2.1 논점의 정리

CSR은 말 그대로 기업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각각의 사회는 나름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에 대해 요구되는 책임도 사회환경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CSR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측면도 있으나, 해당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중심적인 내용이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CSR이 먼저 발전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이러한 환경적 차이로 인해 CSR의 중심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CSR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갈 것인가를 예상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양자의 특성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CSR을 유럽형 CSR과 미국형 CSR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0) ISO 26000의 제정배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ISO Advisory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 *Working Report on Social Responsibility - For submission to the ISO Technical Management Board*(April 30, 2004).

2.2 미국형 CSR

미국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선행위(philanthropy)’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나, 1890년대에도 기업의 부의 보유와 자산기부행위에 관한 측면에서 기업가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즉, 미국에 있어 CSR은 지역공헌 및 기부행위 등 기업이 사회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공헌활동에서 유래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¹¹⁾

아울러 1970년대 중반부터 워터게이트사건 등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빈발하자 기업윤리를 중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기업윤리와 CSR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기업윤리의 경우 법령위반사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내부조직전반 및 사내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CSR은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의 개념에 기반하여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에의 공헌, 환경 문제에 대한 배려, 기부행위 등 사회전체에 대해 선량하게 행위하는 것(doing good)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²⁾ 유럽에서 미국의 CSR을 ‘자선행위와 지역사회’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일 것이다.¹³⁾

2.3 유럽형 CSR

CSR의 또 다른 한축을 이루고 있는 유럽에 있어 CSR의 의미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직면했던 실업문제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기업에 대해서

11) 水尾順一・田中宏司, 앞의 책, 2~3쪽.

12) 經濟産業省, “企業の社會的責任(CSR)を取り巻く現状について”(2004), 4쪽.

13) 藤井敏彦, ヨーロッパのCSRと日本のCSR(日科技連出版社, 2005), 42쪽.

도 실업문제 해결을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CSR이 본격화 되었다.¹⁴⁾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일체성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인재육성 등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기업의 주된 사회적 책임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¹⁵⁾ 이를 CSR이라 칭하였다. 유럽에 있어 CSR의 기본적인 관점은 종업원에게 훈련기회의 제공, 시간제 근무자에 대해 정규종업원과 동일한 훈련을 실시할 책무, 남녀평등의 확대 등을 위해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기업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새로운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직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다.¹⁶⁾

한편, 유럽의 CSR의 경우 노동문제 및 인권문제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실업문제에서 외연이 확대되어 개도국의 노동자

14) 江橋崇, 企業の社會的責任經營(法政大學出版局, 2009), 4쪽. 유럽에서 설립된 ‘CSR 유럽’의 경우도 가장 큰 목적이 실업문제에서 기인한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의 해결에 산업계가 성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CSR 유럽 홈페이지 참조 <<http://www.csrEurope.org/aboutus/governance2/socialexclusion>>

15) 유럽에서 CSR의 시작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1996년 ‘사회적 소외에 반대하는 비즈니스 유럽선언(European declaration of businesses against social exclusion)’이다. 동 선언은 기업의 행동지침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된 내용이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사원채용시 장기실업자에 대한 편견 및 기능이 낮은 자, 신체장애자에 대한 편견을 배제할 것, ② 높은 기능 및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만을 채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채용형태는 기능이 낮은 자에게 별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 ③ 견습제도 및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고 기능이 낮은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기회는 저임금의 신입사원에게 부과해야 하며, 회사는 그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CSR 유럽 홈페이지 참조 <<http://www.csrEurope.org/aboutus/governance2/socialexclusion>> .

16) 藤井敏彦, ヨーロッパのCSRと日本のCSR(日科技連出版社, 2005), 26~27쪽.

문제를 포섭하여 가는 자연적인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에 비해 소외받는 아프리카의 인권문제 및 노동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 하여금 개도국의 인권 및 노동문제에 대해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이처럼 유럽의 CSR은 미국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기업이 주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사회의 보육원에 기부를 하는 것을 중요한 CSR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기부행위는 CSR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¹⁸⁾

Ⅲ. 일본에 있어서 CSR의 도입과 전개

1. 일본의 CSR론의 연혁

일본에 있어서 CSR의 전개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¹⁹⁾ 첫 번째 단계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시기이다.²⁰⁾ 이 시기에는 수은중독 등의 공해문제 등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캠페인GM 사례²¹⁾ 등 미국의 움직임이

17) 藤井敏彦, 위의 책, 31쪽.

18) 藤井敏彦, 위의 책, 41쪽.

19) 野村修也, “企業の社會的責任”, 會社法の爭點 Jurist增刊(2009), 6쪽.

20) 일본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원을 메이지시대부터 찾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松野弘 外, 企業の社會的責任論の形成と展開(2006), 63쪽 이하 참조.

21) 1970년에 있었던 ‘캠페인GM(Campaign To Make General Mortors Responsible)’ 사례는 GM의 주주들로 구성된 캠페인GM그룹이 거대기업으로서 GM의 환경오염 및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의사결정기구의 재구성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제안한 사건이다. GM의 주주총회는 동

소개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한 경기후퇴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도 사라졌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시기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메세나 운동 및 자선활동(philanthropy)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이 CSR로 인식되었다. 당시 발생하였던 록히드 사건이나 리쿠르트 사건 등, 일련의 기업스캔들의 발생 및 당시 버블경제 하에서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에 있어서 부차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기업이 경영하는 본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CSR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종전의 경우 미국식의 자선활동이 주가 되던 것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본격화된 CS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²²⁾ 그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CSR 등장의 주된 배경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의제에 대해 주주와 경영진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경영진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동 사건에서는 이처럼 주주들의 주장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일반시민 및 다른 주주들이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Donald E. Schwartz, "The Public-Interest Proxy Contest: Reflection on Campaign GM", 69 *Michigan L. Rev.* 419(1971) 참조.

22) 江橋崇, 앞의 책, 3쪽.

2. 현대적 의미의 CSR론의 전개과정

일본에 있어 현대적 의미의 CSR은 2003년 경제동우회가 CSR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일본정부 및 경제계는 CSR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많은 보고서의 발표를 통해 사회전체에 CSR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일본에 있어서 CSR에 대한 논의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여왔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경제계와 정부로 나누어 CSR에 대한 대응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경제계의 대응

2.1.1 경제동우회

일본에서 현대적 의미의 CSR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것은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이다. 경제동우회는 2003년에 유럽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연구를 한 결과를 “「시장의 진화」와 사회적 책임경영”이라는 보고서로 발표하였다.²³⁾ 동 보고서에는 CSR의 중요성을 제시함과 아울러 경영자가 CSR경영의 실태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기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²⁴⁾ 경제동우회가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CSR을 중요하게 본 이유는 (i) 글로벌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기업과 사회의 상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ii) 많은 정보

23) 植松和彦, “CSR(企業の社会的責任)のISO化への動向”, 金融資源レポート(2006. 5), 130쪽.

24) 이후에도 경제동우회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이용한 평가이후에 2004년에 ‘일본기업의 CSR -현상과 과제’라는 보고서 및 2006년 1월에 일본기업의 CSR -자기평가리포트’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본에 있어서 CSR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古賀純一郎, “經濟同友會と企業の社会的責任(CSR)”(2009). <<http://www.jlea.jp/ZR09-004>>

와 전문지식을 가지는 NGO 및 NPO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 (iii) 소위 ‘주가편중형 미국식 경영’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경영형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및 (iv) 개인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CSR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고객, 주주, 종업원, 장래의 세대, 지역사회 등)를 폭넓게 시야에 넣어, 기업과 사회의 이익을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높은 차원에서 조화시켜 기업과 사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경영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⁵⁾ 아울러 동 보고서는 기업평가의 체계를 크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코포레이트 가버넌스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시장, 환경, 인간, 사회의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코포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해서는 이념과 리더십, 매니지먼트체계, 컴플라이언스, 정보공시와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²⁶⁾

2.1.2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이라고 한다)의 경우 1991년에 ‘기업행동헌장’을 제정하였다. 동 헌장은 소비자, 고객, 시장, 주주, 종업원, 환경, 사회공헌 등 실질적으로 CSR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²⁷⁾ 이후 CSR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경단련은 2004년 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추진에 관한 기본적

25) 經濟同友會, ‘市場の進化’と社會的責任經營, 〈<http://www.doyukai.or.jp>〉

26) 社團法人 日本機械工業聯合會, 平成16年度 CSR(企業の社會的責任)概念の中小機械製造業への導入促進のための調査報告書(2007.3), 22쪽.

27) 당초의 기업행동헌장은 ‘기업과 소비자생활자간의 공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사회와 기업의 관계성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2004년에 개정 기업행동헌에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萩原愛一, 앞의 책, 9쪽.

사고방식'을 발표하였다.²⁸⁾ 이를 통해 경단련은 CSR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i) 일본경단련은 CSR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ii) CSR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iii) 기업행동헌장 및 실행절차를 개선하여 CSR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2004년 5월에 '기업행동헌장'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기업행동헌장은 전문에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본문에서는 '종업원의 다양성 존중', '국제적인 사업활동에 있어서 국제 물 및 현지 법률의 준수, 현지문화 및 관습의 존중' 등 CSR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수 포함시켰다.²⁹⁾ 아울러 동년 6월에 발표한 '기업행동헌장실행절차'에서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의 금지가 명시되었으며, 국제적 사업활

28) 日本經團連, “企業の社会的責任(CSR)推進にあたっての基本的考え方” (2004.2.17)
 〈<http://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2004/017.html>〉

29) 기업행동헌장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사회적으로 유용한 상품, 서비스를 안전성 및 개인정보, 고객정보의 보호를 충분히 배려하여 개발, 제공하고 소비자,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획득한다. ② 공정, 투명, 자유로운 경쟁 및 적정한 거래를 한다. 또한 정치, 행정과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③ 주주는 무엇보다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행하고 기업정보를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공시한다. ④ 종업원의 다양성, 인격, 개성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한다. ⑤ 환경문제에의 대응은 인류공통의 과제이므로 기업의 존재와 활동에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주적,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⑥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행한다. ⑦ 시민사회의 질서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반사회적 세력 및 단체와 견고하게 대결한다. ⑧ 국제적인 사업활동에 있어서 국제를 및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 의해 현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그 발전에 공헌하는 경을 한다. ⑨ 경영진은 본 헌장정신의 실현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여 사내에 철저하게 하는 것과 함께 그룹기업 및 거래처에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사내외의 목소리 항상 귀 기울이고, 실효성있는 사내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기업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⑩ 본 헌장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때에는 경영진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자세를 대외적으로 명확히하고, 원인규명,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또 사회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와 설명책임을 수행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스스로를 포함하여 엄정한 처분을 행한다.

동에 있어서 현지거래처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관심가질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2 정부의 대응

일본 정부는 2000년부터 CSR에 대한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각부의 경우 2002년 12월에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부회 자주행동기준검토위원회보고’를 통해 소비자에 신뢰받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자주행동기준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즉, 사업자로 하여금 자주행동기준의 책정, 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책정한 것이다. 환경성의 경우도 사회적책임(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에 관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2005년 8월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를 위한 기업, 정부,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 촉진등을 제언하고 있다.³⁰⁾

또한 후생노동성은 ‘노동에 있어서 CSR의 존재형식에 관한 연구회’를 운영하여 2004년 6월에 동 연구회의 중간보고서인 ‘노동에 있어서 CSR추진에 관한 국가 역할 등의 제언’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대체될 수 없는 종업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개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본래적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취해야 할 고용-노동과 관련한 CSR로서 (i)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그 재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고, 개개인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정비와 모든 개인에게 능력발휘 기회를 부여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ii) 해외진출시 현지종업원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 (iii) 인권에 대한 배려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³¹⁾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 살펴본 유럽형 CSR

30) 植松和彦, 앞의 논문, 130쪽.

31) 足達英一郎, “企業の社会的責任と雇用・労働問題”, 日本労働研究雑誌 第530号(200

에서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 CSR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산업성에 작성한 보고서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4년 4월부터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좌담회’를 설치하여 동년 9월에 중간보고서를 공표하였다.³²⁾ 동 보고서는 CSR을 둘러싼 국내외의 동향, CSR의 기본적 관점과 구체적 방안, 기업이 가져야 할 의식 및 금후의 과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CSR에 대하여 기존의 메세나 운동이나 자선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투자자, 종업원,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중시하고 가장 기초적인 법률준수와 함께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공정한 노동기준, 인권, 인재교육, 안전위생, 지역사회공헌 등 광범위한 요소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CSR경영은 단순히 기업이 사회공헌을 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경영자체가 개선되어 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CSR의 경우 크게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첫 번째로 현재의 CSR은 기본이 되는 법령준수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노동, 인권, 자선행위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CSR경영이 기업가치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CSR경영을 유인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도 이러한 의미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³³⁾

4), 51쪽.

32) 經濟産業省, “企業の社會的責任(CSR)に關する座談會 中間報告書”(2004. 9.), <http://www.meti.go.kr/policy/economic_industrial/press/0005570/index.html>

33) 橋高研二, “企業の社會的責任(CSR)について -思想理論の展開と今日的なあり方-”, 農林金融(2006.9.), 538쪽.

3. CSR의 제도화

3.1 ‘CSR보고서’의 가이드라인 제정

일본의 경우 기업에 대해 CSR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2005년 4월에 시행된 ‘환경배려촉진법’에서 독립행정법인 등 일정한 공적법인에 대해서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공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 환경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에 대해 요구되는 CSR은 법률보다 차원 높은 수준이며, 기업의 경우 그러한 사회적 요청에 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CSR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자판단의 재료로서 기업의 CSR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고서’를 제출하여 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각종 단체 및 국제기구는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왔으며, 일본의 경우도 환경성이 ‘환경보고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다.³⁴⁾

3.2 CSR관련 규격의 제도화

CSR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CSR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이다. 즉, CSR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서 설명한 ISO 26000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2년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가 공표한 ‘기업평가기준’ 및 2007년 5월에 발표한 사례집과 함께 중소기업청이 2005년 2월에 공표한 ‘CSR 가이드’ 등이 CSR에 대한 규격으로서 사용되고 있다.³⁵⁾

34) 野村修也, 앞의 논문, 6쪽.

4.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SR은 미국형 CSR과 유럽형 CSR로 구분할 수 있다. 양 지역의 CSR이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영향 하에서 CSR의 성격이 정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CSR의 경우 2003년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이 시기 특징은 미국식 CSR에서 유럽식 CSR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선행위 등 기업의 본업과 관련없는 부수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였던 CSR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본업과 관련된 측면을 중심으로 CSR에 대한 관점이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선행위 및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기업이 자선행위와 지역사회를 고려하기 시작한 이유는 미국과 무역마찰 때문이다. 미국과의 교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미국식 CSR에 대한 배려 또한 게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아울러 2003년 이후 CSR을 추진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규모 기업스캔들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법령준수가 곧 CSR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CSR에 있어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큰 측면을 차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³⁵⁾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일본의 CSR은 종전의 미국식 CSR에서 유럽식 CSR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가 CSR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35) 野村修也, 위의 논문, 7쪽.

36) 藤井敏彦, 앞의 논문, 45쪽.

V. 일본 회사법과 CSR경영원칙

1. 회사법상 도입논의

1.1 1975년 회사법개정과 관련한 논의

1.1.1 논의의 배경

일본 상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상법개정시이다. 당시 일부기업이 분식결산으로 인해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감사제도를 개정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개정이유로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2년에 주식 및 토지에 대한 투기가 증가하고, 1973년에 오일쇼크를 계기로 기업의 매점매석 등의 반사회적 행위가 증가하자 사회전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³⁸⁾ 이에 따라 1974년 에 상법개정에 대한 법무부의 부대결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법제심의회 상법부회에서는 회사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동 부대결의에 따라 법무성 민사국 참서관실에서는 1975년에 ‘회사법 개정에 관한 문제점’을 공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구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문제점 중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법상 도입할 것인가이다. 도입하는 방법으로는 ①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과 ② 현행 회사법의 개별 제도들을 개선하여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³⁹⁾

37) 江橋崇, 앞의 책, 6쪽.

38) 中村一彦, 企業の社會的責任と會社法(信山社, 1997), 1쪽.

39) 中村一彦, 위의 책, 2쪽.

1.1.2 논의의 전개

일반적으로 위 ①의 견해에 찬성하는 설을 적극설이라 하며, ②의 견해에 찬성하는 설을 소극설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각각에 설에 찬성하는 견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적극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독일의 구 주식법 제70조 제1항을 참고하여 일반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단순히 일시적인 주주의 사유물이 아니며 장래의 주주, 종업원,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일반공중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적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기업자체로서 주주의 개인적 이익과는 달리 독자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일반 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근거는 다르지만 일반규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들이 존재하였다.⁴⁰⁾

그러나 이에 대해 소극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일반규정을 마련해도 법적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및 이사의 행위규범을 불분명하게 하여 이사의 재량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규정을 두는 것을 반대하였다. 결국 소극설에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반 규정화 하는 것은 실패하였다.⁴¹⁾

4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中村美紀子, 企業の社會的責任 -法律學を中心として(中央經濟社, 1999), 83~84쪽.

41) 野村修也, 앞의 논문, 7쪽.

1.2 2005년 신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 도입

1.2.1 내부통제시스템의 의의 및 도입배경

2005년에 신회사법이 제정되면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법제화되었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정의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COSO보고서에서는 ‘내부통제란 사업의 유효성과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 재무보고의 신뢰성(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적용되는 법률 및 규칙의 준수(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라는 세 가지 목적의 달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다른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다.⁴²⁾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은 ‘주식회사의 업무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로서(회사법 제362조 제4항 제6호), 구체적으로 ‘컴플라이언스체제, 정보보전관리체제, 리스크관리체제, 효율적 직무집행체제, 그룹내 내부통제 및 감사체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회사법 시행규칙 제100조).⁴³⁾ COSO보고서와 비교할 때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관련한 내용은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이 아니라 금융상품거래법상 내부통제보고서제도로써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기업스캔들과 같은 법률위반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⁴⁴⁾ 기업의 법률위반행위가

42)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1992.

43) 일본 회사법은 회사를 이사회 비설치회사, 이사회 설치회사 및 위원회설치회사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다. 본문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용은 회사법상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감사설치회사에 대한 내용이다.

44) 長谷川俊明, 新會社法が求める内部統制とそ開示(中央經濟社, 2005), 33쪽 이하 참조.

발생한 경우 이미 해당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의 법률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부프로세스를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부통제시스템인 것이다.

1.2.2 내부통제시스템과 CSR

일본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시 명시적으로 CSR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부통제시스템은 CSR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CSR의 법제화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CSR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컴플라이언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곧 CSR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⁴⁵⁾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컴플라이언스, 즉 법령의 준수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을 CSR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히 법령준수가 아니라 사회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사회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결의의무 및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⁴⁶⁾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인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컴플라이언스라고 본다면,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곧 CSR경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 野村修也, 앞의 논문, 6쪽; 藤井敏彦, 앞의 책, 45쪽.

46) 野村修也, 앞의 논문, 6쪽.

2. 최근 동향

1975년 회사법 개정 논의 결과 CSR을 회사법상 일반규정을 하지 않기로 한 이후 회사법상 CSR도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살페본 바와 같이 일반규정으로 CSR을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의 재량을 폭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이후 많은 입법례에서 CSR을 회사법상 도입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2006년 신회사법 제172조에서 이사의 일반적 의무로서 사회적 배려에 대한 요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결정을 함에 있어 장기적인 영향, 종업원의 이익, 거래선 및 고객과의 거래관계,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 평판의 유지, 주주간의 공평성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3년 EU위원회가 제시한 ‘회사법 현대화 지령’에서도 비재무정보의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국내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04년 상법 제289조를 개정하여 CSR에 관한 정보와 재무정보와의 정합성을 감사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을 볼 때 일본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⁴⁷⁾

또한 유럽형 CSR의 도입에 따라 기업의 운영하는 본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CSR이 강조됨에 따라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CSR과 회사법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지분가치의 장기적 최대화를 목표로 해야 할 존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 및 개인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안에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 기업이 도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47) 野村修也, 앞의 논문, 7쪽.

있다. 따라서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리스크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하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규범이나 소프트로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⁴⁸⁾

V. 결론 : 향후 전망

CSR에 대한 국제규격이 될 ISO 26000의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은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CSR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나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회사법상 일반규정으로 도입하지는 못하였지만, 개별 규정의 개정시 CSR을 고려한 흔적들이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울러 최근에는 유럽형 CS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CSR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CSR 추진체제와 관련해서 구분하면 미국형 CSR의 경우 민간에서부터 시작된 bottom-up 방식인데 반해, 유럽의 경우 정부 등이 주도하는 top-down 방식이라는 점이다. 일본이 유럽형 CSR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향후 일본의 CSR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CSR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즉, 회사법상 CSR경영원칙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예에서 보았듯이 향후 어떠

48) 神作裕之, “企業の社会的責任: そのソフトロー化? EUの現状”, ソフト・ロ研究 第2号(2005), 92쪽.

한 형태든 법률로서 CSR경영원칙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CSR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민간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산발적인 논의는 있지만 아직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학계에서도 CSR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ISO 26000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CSR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투고일 2010년 5월 18일, 심사일 2010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 2010년 7월 13일)

주제어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투자, ISO 26000, 내부통제시스템, UN 사회책임투자원칙

참고문헌

1. 단행본

- 노희진 외, 사회책임투자 개념 및 국제동향, 한국증권연구원, 2006.
- 長谷川俊明, 新會社法が求める内部統制とそ開示, 中央經濟社, 2005.
- 中村美紀子, 企業の社會的責任 -法律學を中心として, 中央經濟社, 1999.
- 中村一彦, 企業の社會的責任と會社法, 信山社, 1997.
- 經濟産業省, 企業の社會的責任(CSR)に關する座談會 中間報告書, 2004.
- 日本經團連, 企業の社會的責任(CSR)推進にあたっての基本的考え方, 2004.2.
- 社團法人 日本機械工業聯合會, 平成16年度 CSR(企業の社會的責任) 概念の中小機械 製造業への導入促進のための調査報告書, 2007.3.
- 松野弘 外, 企業の社會的責任論の形成と展開, 2006.
- 藤井敏彦, ヨーロッパのCSRと日本のCSR, 日科技連出版社, 2005.
- 江橋崇, 企業の社會的責任經營, 法政大學出版局, 2009.
- 藤井敏彦, ヨーロッパのCSRと日本のCSR, 日科技連出版社, 2005.
- 經濟産業省, 企業の社會的責任(CSR)を取り卷く現狀について, 2004.
- 水尾順一・田中宏司, CSRマネジメント -ステークホルダーとの共生と企業の社會的責任-, 生産性出版, 2004.
- 谷本寛治, SRI - 社會的責任投資入門, 日本經濟新聞社, 2003.
- ISO Advisory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 *Working Report on Social Responsibility - For submission to the ISO Technical Management Board*, 2004.4.30.
-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1992.

UNEP, *The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06.4.27.

2. 논문

곽관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제25권 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6.

神作裕之, “企業の社會的責任:そのソフト・ロー化? EUの現状”, ソフト・ロー研究 第2号, 2005.

橋高研二, “企業の社會的責任(CSR)について -思想理論の展開と今日的なあり方-”, 農林金融, 2006.9.

足達英一郎, “企業の社會的責任と雇用・労働問題”, 日本労働研究雑誌 第530号, 2004.

經濟同友會, ‘市場の進化’と社會的責任經營, 〈<http://www.doyukai.or.jp>〉

古賀純一郎, “經濟同友會と企業の社會的責任(CSR)”, 2009.

植松和彦, “CSR(企業の社會的責任)のISO化への動向”, 金融資源レポート, 2006.5.

Donald E. Schwartz, “The Public-Interest Proxy Contest: Reflection on Campaign GM”, 69 *Michigan L. Rev.* 419, 1971.

[Abstract]

The Study on CSR in Japan Corporate Act

Kwan-Hoon Kwak*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a new way of looking at business activities. In recent year, consumers, stockholders and the broader civil society are more aware of harmful business practices and have come to exact high standards from corporations and to insist that goods be produced not only efficiently but also ethically. Positive attention of consumers and investors increases market opportunities and yields direct economic benefits. Moreover, the investments and core assets of a company, such as brand and image, are less likely to be tainted by revelations of unethical conduct if the corporation pursues a philosophy of CSR.

In general, corporations strive to make profits and increase the value of their shareholders' investments. The traditional view is that a corporation that meets this goal has a beneficial impact on the community where it is based by creating new jobs and by enhancing its economic welfare. However, there is a growing view among investment professionals that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ESG) issues can affect the performance portfolios. Investors fulfilling their fiduciary duty therefore need to give appropriate consideration to these issues.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in Sunmoon University.

Key Word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ISO 26000, Internal Control System,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PRI)

